

# 지역균형발전 대책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개발지향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가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국토의 개발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성장은 그 이면에 인구 및 산업의 일부지역 편중과 여타지역의 소외라는 지역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지역불균형 현상은 전국적으로는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이라는 문제와 지역적으로는 과밀과 과소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반하게 마련.

그간 정부는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 특정지역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

모하고, 과밀문제를 해소하며 낙후지역을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정책이 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지방의 수용여건이 부족하였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 그 실효성이 높지 못했었다는 게 전문가의 평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말로 완료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하고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과 박상규 과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글 | 왕희삼 기자〉



박상규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과 과장

### ▣ 먼저 기존시책의 문제점은?

수도권 집중추세를 다소 둔화시키는 역할은 하였으나, 인구·제조업체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었다(인구: 21%(1960) → 45.9%(1999), 제조업체: 27%(1960) → 55.6%(1999)). 즉,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고착된 '서울제일주의'를 타파하는데 실패했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대책의 종합성·일관성이 부족하고 단편적·대중적으로 대처한데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을 육성하는 적극적인 시책보다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소극적 규제 위주로 추진하여 서로 다른 정책목표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구호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종합적인 지역균형개발 전략보다는 SOC 확충 등 물리적 정책수단 위주로 단편적인 추진을 보였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의 성장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시책은 한계를 노출하는 문제점을 들어냈다.

### ▣ 이번에 마련한 지역균형발전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식약청 등 3개 보건의료기관의 오송단지 이전과 아산신도시 개발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정부부처의 소속기관·산하기관중 수도권내 입주할 필요가 없는 기관은 청사의 신규 매입을 최대한 억제하여 지방 분산을 유도키로 하였다.

또한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중인 '기업의 지방이전촉진 대책'의 시행시기를 2005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법인세 감면 등 지원을 지속키로 하였다.

이와 아울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실질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온 종전부지의 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종전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특례를 규정하고, 지방 이전시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는 기업의 범위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영위한 종업원 1천명이상 기업에서, 3년이상 영위기업으로써 종업원 500명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학의 지방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대학의 부지를 장기저리로 조성 원가에 공급하고, 본교정원의 일부증원을 허용하는 등 지원시책을 도입하였다.

지방소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오폐수처리시설 및 문화재조사비 전액을 국고지원하는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재산세·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면제하기로 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방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여 향후 10년간(2003~2012) 미조성·미분양 산업용지 2,100만평의 20%인 420만평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국민임대산업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이 산업단지에 국고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장용지를 공급하는 산업단지로서, 단지기반시설비 전액(총조성비의 30% 수준)을 재정에서 보조하게 되므로 임대료가 기존 임대단지보다 50% 가량 저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조성비용이 평당 40만원인 산업단지의 국민임대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보증금 4만원과 연간 1만 4천원의 평당임대료(기존 연간 2만7천원)만 지불하면 입주가

〈표 1〉

지역균형발전정책 비교

	현 행	개선안
<b>【공공기관 이전촉진】</b>		
- 소속·산하기관 청사 수도권 입지규제	- 신축 : 금지 - 매입·임대 : 수도권심의회 후 허용	매입은 불허 임차·증축은 최대한 억제 (수도권정비위원회회심기준 제정)
<b>【기업지방이전촉진대책】</b>		
- 세제지원	2002년말까지 이전추진기업 대상 - 법인세 6년간 면제, 그후 5년간 50% 감면 - 취득세·등록세 면제 -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 - 기존 공장·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3년간이연후 3년간 분할납부	시행시기를 2005년까지 3년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종전부지	- 토지공사가 채권으로 매입	- 용도변경의 특례를 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 배후도시 개발권	- 과밀억제권역내 5년이상 + 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	- 과밀억제권역내 3년이상+종업원 500명이상 기업(도시개발법시행령개정)
<b>【대학 지방이전 지원】</b>		
- 지방이전 대학지원	(별도지원 없음)	- 이전부지를 조성원가공급+장기분할납부허용 - 본교정원의 일부증원 등 인센티브 부여 (제도운영개선)
<b>【지방소재 산업단지 지원】</b>		
- 지방소재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 진입도로 100% - 공업용수 100% - 오폐수처리시설 50% 국고지원	- 오폐수처리시설 100% 지원 - 문화재조사비(100%)를 지원대상에 추가 (예산반영)
- 세제지원	- 재산세·종토세 50%(5년간)감면	- 재산세·종토세 100%(5년간) 감면 (지방세법 개정)
-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도입	(신설)	- 재정이 30% 지원되는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 도입 (산업입지법시행령 개정)
<b>【지방이전 기관 종사자 지원】</b>		
-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 10만이상 도시의 1천㎡이상의 시설물에 1㎡당 350원을 부과 - 지자체의 조례로 50/100까지 경감 가능	- 종업원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이전 기관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한 경감하도록 조례개정을 유도 (지자체 조례개정)
- 주택 특별공급	(지원없음)	- 지방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주택공급규칙 개정)
SOC투자	(운영방안)	수도권은 민자중심건설 절감되는 제원은 지방의 SOC 및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

가능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하여는 주택을 특별 분양할 계획이며, 주거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역균형발전 대책은 소관부처별 로 추진에 착수하여, 금년말까지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도부터 공공기 관·기업·대학의 지방이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 방소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본격 추진되어 지 방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문별 시책은 어떠한가?**

공공기관 이전촉진, 기업지방이전촉진대책, 대학 지방이전 지원, 지방소재 산업단지 지원, 지방이전 기관 종사자 지원 부문으로 나눠 비교를 할 수 있 다. 현행시책과 개선안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표 1〉 참조).

**▣ 국민임대산업단지에 많은 관심이 기울어질 것으 로 예상되는데 조성계획은?**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여 저렴한 임대단지를 조성하므로 미 분양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그 목적을 두

고 있다.

조성 및 관리주체는 지자체, 토공 등 공공사업시 행자가 된다.

조성면적은 10년간 총 420만평(미분양·미개발 단지의 20%를 활용)이며, 국고지원은 10년간 총 1 조원으로 보조 5천억원(조성비(420만평×40만원) ×30%), 용자 5천억원(조성비(420만평×40만원) ×30%)이다.

재원분담에 대해서는 〈표 2〉와 같다.

**▣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대상지역은?**

지방소재 미조성·미분양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조성하며, 수도권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중 미분양 산업단지를 우선대상으로 하되, 입주수요, 접근교통망, 지역경제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8월중 현지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대 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국민임대산업단지가 언제부터 업체 에 실제 공급될 수 있는지?**

연말까지 제도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및 대상지 역 선정을 완료하고, 2003년 초부터 조성에 착수 하고 빠르면 2003년 하반기부터 공급개시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

**〈표 2〉**

**재원분담**

구 분	국고보조	재정용자	사업시행자	입주업체
항 목	기반시설 공사비 (보상비제외)	보상비 수준	조성비, 조사 설계비, 관리비 수준	임대보증금
비 율	30% 수준	30%	30% 수준	10%

\* 국민임대주택 : 국가보조 30%, 용자40%, 시행자 20%, 입주업체 10%  
 \* 임대보증금 : 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상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이 10%임  
 \* 실제 국고보조, 사업시행자부담은 단지여건에 따라 다름